

제 903 호  
1982. 4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강남청년수  
업협회 : 강 박 광 이 훈 우  
전화 : 726-7894  
안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 
전화 : 72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	배		
제 1617 호 :	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	.....	3
제 1618 호 :	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	.....	3
제 1619 호 :	서울특별시본청, 구청, 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	.....	4
제 1620 호 :	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	.....	5
◎ 규	칙		
제 1969 호 :	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무분장규칙제정	.....	6
◎ 고	사		
제 155 호 :	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	.....	7
제 156 호 :	도시계획시설(공용의창사)결정및취적승인	.....	8
제 157 호 :	도시계획시설(공용의창사, 도로)결정및변경	.....	8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제 158 호 :	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계획인가 .....	9
제 159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 .....	9
제 160 호 :	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 .....	10
제 161 호 :	도시계획시설 ( 화물자동차정류장 ) 결정및지적승인 .....	11
제 162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, 도로 ) 시행자명의변경승인 .....	12
제 163 호 :	건축선폐지승인 .....	13

◎ 공 고

제 163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.....	13
제 164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.....	14
제 168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공람공고 .....	14
제 169 호 :	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 .....	15
제 170 호 :	도시계획 ( 도로 ) 실시계획공람공고 .....	15

◎ 사 령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들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4월 22일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617 호

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  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(별표) 지방공무원 정원중 7급  
란 "별정직 10"을 "별정직 3"으로  
합계란 "40"을 "33"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 
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  
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중  
개정 조례들 이에 공포한다.

1982.4.22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618 호

서울특별시립 청소년사업관  
설치조례

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사업관 설치  
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 (설치목적) 청소년 선도 및  
전진육성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 
위한 전문적인 행정을 관장키 위  
하여 서울특별시립 소속하에 서울  
특별시립 청소년사업관 (이하 "사업  
관"이라한다)을 둔다.

제 2조 (위치) 사업관의 위치는 시  
장이 따로 교시한다.

제 3조 (직무) 청소년사업관은 다음  
사항을 관장한다.

1.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
2. 청소년의 사회교육 및 여가  
선동
3. 지역사회 자원의 육성활동
4. 구단위 아동청소년회관 지원  
지도
5. 청소년문제 조사연구
6. 기타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  
함

제 4조 (관장) ①사업관에 관장 1인  
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
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
으로 한다.

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

<p>를 처리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 제 5 조 (공무원의 정원) 사업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. 제 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</p>	<p>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

(별표)

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

직 급 별	정 원	정 원 내 용
5 급	1 명	행정 또는 별정직 1
6 급	1 명	행정직 1
7 급	7 명	별정직 7
8 급	-	-
고 용 직	5 명	수위 1, 타자원 1, 청부 1, 경비원 1, 사환 1
합 계	14 명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, 구청,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.4.22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619 호

서울특별시본청, 구청,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본청, 구청, 공무원교육

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(별표 1) "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" 의 가, 일반회계 정원표중 5급 정원 "174"를 "172"로, 행정직 "132"를 "130"으로, 합계란 "1,521"를 "1,519"로 한다.

(별표 2) "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" 의 가, 일반회계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"2,215"를 "2,193"으로, 애표원 "138"를 "116"으로 합계란 "7,812"를 "7,790"으로 한다.

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</p>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4.22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</p> <p><b>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620 호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설치</p>	<p>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4 조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행정사무관,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한다.</p> <p>(별표 1) "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" 다음에 "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"을 추가한다.</p> <p>(별표 2)에, "다. 근로청소년회관 정원표"를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</p>
<p>다. 근로청소년회관</p>	

계 급	정 원	정 원 내 용
5 급	1	행정직 또는 별정직 1
6 급	3	행정직 2 별정직 1
7 급	10	행정직 2 별정직 8
8 급	-	-
9 급	1	행정직 1
고 용 직	25	청부 1, 영양사 1, 취사부 2, 수위 4, 타자원 1, 운전원 1, 간호원 1, 보이라공 2, 전공 1, 미용사 2, 이용사 2, 보조수 5, 민원보조원 1, 사환 1
계	40	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4.23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969 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사무분장규칙제정

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부녀복지관) ①부녀복지관에 관리제와 혼련제를 두고, 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부녀복지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 리 제

가. 문서보안, 관인, 관수, 인사 및 청사관리

나. 예산, 회계 및 물품관리

다.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

라. 관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혼 련 제

가. 의상, 급식조리, 미용, 자수, 도장의 교육

나. 생활개선 계몽 및 교양지도

다.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교육

라. 기타 기능교육

제 3 조 (근로청소년 회관) ①근로청소년회관에 관리제, 교육제 및 상담실을 두고, 관리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, 교육제장과 상담실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근로청소년회관의 제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 리 제

가. 문서, 보안, 관인, 인사 및 청사관리

나.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

다.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

라. 타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교 육 제

가. 정신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

나. 인보험동사항

3. 상 담 실

가. 상담 및 가정생활 지도

나.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직무대행) 관장이 사고로

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조항)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시행규칙중 제 9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.

## 교 시

## 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5 호

##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32 호('76.12.29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('79.12.10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 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

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4.20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종로구신교동 2-76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
도시계획사업(학교) 국립 서울맹학교 교사 개축 및 증축
- 다. 사업규모 및 면적
  - 1) 건축면적  
(가) 기존면적 : 450.05 ㎡  
(나) 증축면적 : 70.87 ㎡  
(다) 연면적 : 1,162.08 ㎡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
  - 1) 주소 : 신교동 1
  - 2) 성명 : 국립서울맹학교장
- 마. 사업착수 준공예정일
  - 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
  - 2) 준공년월일 :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학교명	소재지	지목	지적	소유자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국립서울맹학교	신교동 2-76	학교	2,231 ㎡ (674.9평)	국(문교부)	없음
	" 1-4	"	7,533.6 ㎡ (2,291평)	"	"
	" 2-1	대	153.4 ㎡ (47.6평)	"	"
	" 2-6	"	198.3 ㎡ (60평)	"	"

<p>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위와 같음.                  아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</p> 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6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                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</p>	<p>청사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'81.12.31)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4.20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</p>
○ 시설 조 서	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중구충무로1가21의1일대	11,000㎡	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7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 도로)                  결정 및 변경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 도로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</p>	<p>521 호 ('81.12.31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4.20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</p>
○ 시설 조 서	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강남구반포동 520 일대	28,379㎡	지적승인포함



○. 도 로 조 서							
구분	등급	유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	6m	165m	강남구반포동 517의 2	강남구반포동 547의 4	
변경	"	"	"	"	"	"	제 지
○.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8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</p> <p>1. 건설부고시제 145 호 ('78.6.15) 및 동제 320 호 ('78.10.25) 및 동제 53 호 ('80.2.22) 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681 호 ('78.12.23) 및 동제 78 호 ('81.3.23) 로 지적고서하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03 호 ('82.3.3) 로 공람 공고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4.21 서울특별시장</p>				<p>1061-43 에서 남현동 602-344 일원</p> <p>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당동 82 광장 - 시흥군 관문리간 도로확장 (지하철 4 호선 검공구간) 공사</p> <p>3. 단적 또는 규모 폭 = 15 m    연장 = 250 m</p> <p>4.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(관악구청장)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- 1984.12.31</p> <p>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단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</p>			
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관악구 남현동</p>				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</p> <p>1. 건설부고시제 199 호 ('80.7.3)</p>			

로 학교용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호('81.12.31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4.21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경기도 시흥군 파천지구 02부락
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 
 명 칭 : 파천중학교

다. 사업면적 및 규모

- 부지면적 : 18,282 ㎡
- 교사대지 : 4,315 ㎡
- 체육장 : 9,640 ㎡
- 녹지 등 : 4,327 ㎡

○ 건축규모

- 교사 1호동 (27 교실)
- 창고, 변소, 숙직실, 급수시설 각 1동

라. 시행자 주소, 성명 : 광명시 교  
 육청교육장  
 최 병 권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·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30  
 일 이내

· 준공예정일 : 1985.12.30

바. 위치 및 제시 평면도

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0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

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0호('82.2.3)

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신설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521호('82.12.31)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4.22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조서	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	비 고	
신설	학교 (국민학교)	강서구화곡동산 62일대	9866.7㎡ (2682명)		
<p>나. 지적승인도면 1부 (도면생략).</p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1호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제 484호 ('79.11.23)로 도시계획시설 ( 화물자동차정류장 ) 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와 건설부고시제 521호 ('81.12.31)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2.4.22 서울특별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화물터미널건축물증축 (토지조서)</p> <p>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정동 812번지의 5필</p> <p>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 화물자동차정류장 ) 시행허가 및 명 칭 : 공용화물자동차정류장</p> <p>3. 사업 규모 : 건축물 (증축 2940㎡)</p> <p>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강서구 신정동 812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 대표 김 용 철</p> <p>5. 사업시행기간 : 1982.4.22 ~ 1983.4.21</p> <p>6.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조서</p> <p>7. 허가도서 : 별첨도면 (도면생략)</p>					
위치	지 번	지 목	지 적	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	비 고
강서 신정	산 135-2 812-3	잡종지	1770	○ 강서구 신정동 812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 ○ 중구남대문로 2가 10-1 주식회사 서울신택은행 (오류동지점)	소 유 자  근저당권자
	812	대	4132	상 동	

위치	지 번	지 목	지 적	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	비 고
	산 142-1 812-5	잡종지	89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서구신정동 812 주식회사 서부트럭 터미널</li> <li>중구남대문로 2가 10-1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(오류동지점)</li> </ul>	소유자 근저당권자
	산 143 812-4	잡종지	107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산구원효로 2가 61-15시안법인 경주정씨양정공과종약원</li> <li>구로구오류동 39-5 오류 1동마을금고</li> </ul>	소유자 근저당권자
	015-1	전	270	상 동 (소유자)	
	813	답	1196	마포구서교동 34-8 김영정	소유자
		계	9336		

(건 물 조 서)

구 분	규 모	소 유 자 (이해관계인)
1 동	1 총 444.6 평 2 총 444.6 평 3 총 444.6 평 지하실 444.6 평 옥 탑 37.6 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유자 : 강서구신정동 812 주식회사 서부트럭 터미널</li> <li>근저당권자 : 중구남대문로 2가 10-1 주식회사 신탁은행 (신월동지점)</li> </ul>
2 동	상 동	상 동
	계 3632 평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2 호

도시 계획 사업 (학교, 도로)  
시행자명 의 변경 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2 호 ('78.8.1)  
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5 호 ('78.  
10.4) 로 시행 허가된 도시 계획  
사업 (학교, 도로) 시행 허가에 대  
하여 도시 계획 법 제 24 조 및 25

조, 동법 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  
시 제 521 호 ('81.12.31) 에 의거  
이들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 
한다.

1982.4.22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 
산 59-2 의 8 필 및

동소 내발산동  
436-3 → 산 58
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,  
도로 ) : 우선중 · 여고
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
10,022.06 평 및 B = 12 m  
L = 225 m

4. 시행자 명의 변경 사항  
○ 당초 사업시행자  
충남당진군송악면가학리 395  
학교법인 삼보학원 이사장  
김 형 진  
○ 변경사업시행자  
충남당진군송악면가학리 395  
학교법인 금용학원 이사장  
김 형 진

5. 사업시행기간  
'70.9.4 ~ '82.6.30

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  
적, 소유권 권리명세 : 별첨토지조서  
(생략)

7. 허가내용 : 별첨허가도서 (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63 호

건축선채지승인

1.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 27 조 규  
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  
여 건축법제 45조제 1항에 의거  
채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축과와  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 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4.22  
서울특별시장

가. 건축선 채지승인조서

1) 위치 : 마포구노고산동 107번지  
12호 지상내 지정채  
건축선 ( 폭원 = 4 m  
연장 = 12.5 m )

2)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 
생략)

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163 호

K.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서울특별시공고제 379 호 ('81.12.  
18)로 K.S 표시 정지처분한 사항에  
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  
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 
준해 이를 공고한다.

1982.4.19  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 : 2165

- 2. 허가일자: '80.8.16
- 3. 대표자: 홍순길
- 4. 소재지: 강서구염창동 36-15
- 5. 품명: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
- 6. 규격번호: KSB 9424
- 7. 처분일자: 공고일로부터 3개월
- 8. 종류등급: 3종 3호
- 9. 제조업체명: 성산브레이크공업(주)
- 10. 해제일자: '82.3.17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164호

K.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제 21조 규정에 의거 K.S 표시 정지처분한 바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 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.

1982.4.19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: 제 2338호  
 허가일자: '81.3.18  
 제조업체명: 협성도어칼로우저  
 대표자: 김학주  
 소재지: 서울영등포구신길동 209-101  
 규격번호: KSF 4505

품명: 도어칼로우저  
 종류및등급: 표순형 (3호)  
 처분일자: '82.1.3  
 해제일자: '82.4.12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168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납공고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144호('77.5.11)로 학교변경 결정(추가) 및 지적 승인된 강남구 반포동 753번지의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코자 도시계획법제 25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납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4.20

서울특별시장

공납개요

- 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반포동 753번지의 1필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
- 다. 학교부지 면적: 42,012㎡, 사업규모: 보일러설치(59.4㎡)

<p>라. 사업시행자 : 학교법인 일주학원 이사장 이 임 용</p> <p>마. 사업예정기간 : 1982.4 - 1982.7.31</p> <p>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</p> <p>사. 시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</p> <p>아.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(생략)</p> <p>자. 기타사항 :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</p>	<p>(설계도서 생략)</p> 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69 호</p> <p>제 2 종전기공사면허신호</p> <p>전기공사법 제 30 조 제 5 항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면허가 실효되었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 4. 19. 서울특별시 장</p>
--	---

아 래

면허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실효일자	사유
제 2 종제 43 호	(주) 중앙건설	조 승 규	중구태평로 2 가 305 번 기	82.4.10	제 1 종 양수에 다른 제 2 종 전기공사면허지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7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공람 공고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 294 호 (78.10. 2) 도시계획시설 결정 (도로) 서울시 고시 제 336 호 (80. 9.30) 지적 고 시된 미아로 확장공사구간내 편입 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 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을 수립</p>	<p>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 정에 의거 공고일부터 14 일간 일 반의 공람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 함.</p> <p>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간 음함.</p> <p>3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에 (95-3470)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오니</p>
---	--

<p>공람중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2. 4. 21. 서울특별시 공람개요</p> <p>1. 사업장의 위치: 성북구동소문동1가, 성북동1가, 삼선동1가, 동소문동2가 일부</p>	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미아로 확장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: B = 5 ~ 10 m L = 780 m</p> <p>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</p> <p>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로부터 - 83.11.31.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명세: 별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: 별첨</p>
---	--

토 지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	편입 면적	소유자 성명 주소		소유권이외의권리 의종류 및 내용
					관계인 성명 주소		
1	동소문1가 83-1	대	66 (㎡)	32 (㎡)	김병근	동소문1가 83	
2	" 84-1	"	59.6	27	이우석	" 84	
3	" 80	"	6.6	6.6	이병래	돈암 442-4	
4	" 81	"	3	3	김병근	동소문1가 83	
5	" 82	"	7	7	"	"	
6	" 2가 245-1	"	95.8	5	박철원	" 4가 39	80.6.21가동기
7	" 247-1	"	99.1	6	이영희 이효준 (주)국민 은행	성동구중곡동 122-4 동소문2가 247 중구남대문로2가9-1	8백만원근저당
8	" 249-1	"	172	5	박종홍	동소문2가 249	
9	" 251-1	"	99.1	2	변형숙	성북동 129-50	
10	성북동1가 35-48	"	72.7	50.1	심성관 외 41인	성북동 195-1	



일련 번호	소재지지번	지목	지적	권입 연적	소유자성명주소		소유권이외의권리 의종류 및 내용
					관제	인성명주소	
11	성북동1가35-47	대	437	83.8	김영균	마포구서교동446-5	
12	" 35-46	"	72.7	17.2	양원식	성북동1가35-4	
13	" 34-1	"	116.4	79.6	외5인 박창환	" 34	
14	" 35-36	"	8.9	8.9	외41인 심성관	" 195-1	
15	" 35-45	"	82.6	59.4	"	"	
16	" 35-55	"	254.5	0.1	"	"	
17	동소문1가13-1	"	64.1	24.2	김경자	동소문1가13	
18	" 14-1	"	89.2	61.5	농업협 동조합	종로구종로1가36	
19	" 15-1	"	47.2	47.2	"	"	
20	" 16-1	"	166.2	55.7	"	"	
21	삼선1가13-14	"	105.7	0.1	이기윤	삼선1가10-4	500만원근저당
22	" 13-15	"	638.0	166.3	국민 은행 신 은 행	남대문로2가10-1	
23	" 14-5	"	420.5	96.7	홍삼표	삼선1가14	
24	" 12-3	"	1444.6	147.0	이창진	서대문천연동98-16	
25	" 8-1	"	332.2	105.3	강병건	은평구녹번동산1	
26	동소문1가112	"	208.6	110.1	윤기태	동소문1가112	
27	동소문2가221-16	"	49.2	44.4	박정원	동소문4가39	
28	동소문2가221-17	"	42	42	이영희	성동구중곡동122-4	80.6.21가등기
29	" 221-7	"	43.6	443.6	이호준	동소문2가247	
30	" 221-8	"	43	43	국민 은행 변형숙	①7백②4백5십 성북동176-50	근저당설정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지목	지적	면적	소유자성명주소		소유권이외의권리 의종류 및 내용
					관제인성명주소	관제인성명주소	
31	동소문 2가 221-3	대	53.2	53.2	서병승	동소문 2가 221-3	가 등 기
32	" 6-7	"	47.6	47.6	김복선 여성주 외 3인	종로구종로4가299-2	
33	" 5	"	45.3	45.3	이용주	동소문 2가 11	
34	" 3-1	"	105.4	81.8	양승기	" 3	
35	" 2-5	"	152	69.3	최근유	명륜동 1가 3	
36	" 1-6	"	293.5	245.7	김석제	성북동 37-24	
37	" 1-7	"	175.2	13.8	신정순	성북동 37-24	

건 물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구조및 규 격	면적	소유자성명주소		소유권이외의권리 의종류 및 내용
				관제인성명주소	관제인성명주소	
1	동소문 1가 84	목조와즙 주 택	26.3	이우석 외 1인	동소문 1가 99	8 백 만 원 근 처 당
2	" 83	목조와즙 및도단즙	34 ①층	김병근	" 83	
3	" 112	도 단 즙	26.4 ②층	"	"	
		철근콘크리 트스라브	106.9 ①층	윤기태	" 112	
4	" 221-6 247	사무실및 집 포 지 하 실	106.9 ②층	"	"	
		철근콘크리 트평육개	42.5 ①층	이호준	동소문 2가 247	
		집 포 사 무 실	42.5 ②층	(주)국 민 은 행 이호준	중구남대문로 2가 9-1 동소문 2가 247	

일련 번호	소재지지번	구조및 규격	면적 면적	소유자성명주소		소유권이의의권 리의종류및내용
				관계인성명주소	소유자성명주소	
5	동소문2가221-7 249	주 택	42.5 ③층	이호준	동소문2가247	
		지하실1개		"	"	
6	" 221-8 251	목조와습 주 택	38.2	박종홍	동소문2가249	
		목조와습	48.2	변형숙	성북동179-50	
7	" 6-7 12	철근콘크리 트 평옥개 점 포	103.8 ①층	이종선	동소문2가13	
			103.8 ②층	"	"	
8	" 5-11	목조스레트 습 점 포	103.8 ③층	"	"	
			49.6 ①층	이용주	동소문2가11	
9	" 3	철근콘크리 트 연와조 평 옥 개	49.6 ②층	"	"	
			81.6 ①층	양승기	동소문2가3	
10	" 2	목조와습 주 택	81.6 ②층			
			81.6 ③층			
11	" 1-1 1-2	목조와습 점 포	81.6 ④층	최근유	동소문4가103-7	
			33.1			
12	성북1가35-22	연 와 조 합석습점포	208.8	김석재	성북동37-24	
			47.5 ①층	안희수	삼선동5가3	
13	성북동1가35-3 34	철근콘크리 트 연와조 평옥개점포 및 주 택	47.5 ②층			
			82.0 ①층	김영균	마포구서교동 446-5	

일련 번호	소재지지번	구조및 규격	현입면적	소유차성명주소		소유권이의의관 리의종류및내용
				완제인성명주소		
14	성북동 1가 34-36	철근콘크 리트조 병가건 점포1동	82.0②층 82.0③층 82.0④층 ⑤층일부 지하실1개 10.5	김길복	성북동 176-3	
15	성북동 1가 34-35	철근콘크 리트조 점포및주택	66.5①층 76.5②층 76.5③층 ④층일부 옥탑일부	김경자 외 1인	성북동 1가 35-1	
16	동소문 1가 13	목조와즙 주택	20.7	김경자	동소문 1가 13	
17	" 14 " 15 " 16	철근콘크 리트 평옥개 영업용	158.0①층 158.0②층 ③층 ④층 지하 1개	서울농협	중구도동 1가 3-106	
18	삼선 1가 13-1	철근콘크리 트 스라브	135.0①층 135.0②층 135.0③층 옥탑일부	서울신 탁은행	중구소공동 116-1	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구조및 규격	면적	소유자성명주소		소유권이의권 리의종류및내용
				관제인성명주소	관제인성명주소	
19	삼선동 1가 14	목조도단층 주 택	64.4	홍삼표	삼선 1가 14	
20	" 12-1	목조외층 주 택	26.4	이창진	" 12-1	
21	" 12-1	목조외층 영 업	10.3	"	"	
22	" 8	연 와 층 스라브층 사 무 실	79.3 ①층  79.3 ②층 79.3 ③층	유홍진	중구초동 106-9	

사 령

◎ 1982년 4월 21일자      령제 163 호

관악구제 무과      진 제 훈  
지방행정서기

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해제

강서구목 1 동      김 광 수  
지방행정주사보

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근무  
(82.4.21-82.10.20)

강동구방이동      장 계 호  
지방행정서기보

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근무  
(82.4.21-82.10.20)

령제 164 호

교통국교통기획과      이 흥 근  
지방행정주사보

시립대학근무를 명함.

◎ 1982년 4월 20일자      령제 165 호

총      유      과      관      상      영  
지방전기장 (7등급)
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<p>◎ 1982년 4월 21일자 명제 166 호</p> <p>강서구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방한익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 <p>명제 167 호</p> <p>강서구주택과 지방행정주사 한유식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 <p>강서구주택과 지방행정서기 윤관여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 <p>종로구종로5,6가동 지방행정서기보 김동배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 <p>명제 168 호</p> <p>도봉구 지방건축기사 차재길</p>	<p>성북구 파견근무 (82.4.21-82.8.20)</p> <p>◎ 1982년 4월 10일자 명제 169 호</p> <p>총무과 지방전무기사보 정락길</p> <p>총무과 지방전무기사</p> <p>◎ 1982년 4월 23일자 명제 170 호</p> <p>치수과 지방토목기사보 최재인</p> <p>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 <p>명제 171 호</p> <p>영동포병원약제과장 지방약무기사 정동연</p> <p>의약과 의약제장</p> <p>◎ 1982년 4월 24일자 명제 172 호</p> <p>김포수원지사무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오봉섭</p> <p>82.4.16 자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.</p> <p>서울특별시</p>
--	---